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심사보고서

2024. 11.

법제사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7월 11일, 유상범의원 등 11인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7월 1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6차 법제사법위원회(2024.9.23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
소위원회

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4.11.5.) 상정, 축조심사

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4.11.13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수정가결)

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(2024.11.27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
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

(유상범의원)

현행 「출입국관리법」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, 성별,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·관리하고

있으나,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.

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,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되어, 수사·과세·복지 등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·보유·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조제17호,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정환철)

개정안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인 행정정보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으로, 관계 행정기관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 처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에 요청하고 법무부는 플랫폼을 통하여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외국인 행정업무처리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임.

나아가 법무부와 관계 행정기관이 개정안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행정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출입국·외국인정책의 수립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만, 안 제78조의3제1항의 ‘관계 법령’의 의미와 관련하여, 이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행정기관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지나, 외국인 정보의 ‘수집·보유·관리’와 ‘제공’의 근거가 함께 규정됨에 따라 그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.

따라서 제78조의3제1항 중 “제78조,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·보유·관리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”을 “제78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·보유·관리하거나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”으로 수정하여 법문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김승원)

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,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법무부장관의 기본인적정보 사용 권고를 존중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, 개정안 제78조의3제1항의 규정 중 ‘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’은 ‘수집·보유·관리’의 근거가 아니라, ‘제공’의 근거이므로, 법문의 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의결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

안 제78조의2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, “제78조,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·보유·관리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”을 “제78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·보유·관리하거나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”으로 수정함(안 제78조의3제1항).

8. 심사결과

수정의결

9. 심사보고서 붙임서류

가.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나.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4. 11.

제안자 : 법제사법위원장

수정이유

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,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법무부장관의 기본인적정보 사용 권고를 존중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, 개정안 제78조의3제1항의 규정 중 ‘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’은 ‘수집·보유·관리’의 근거가 아니라, ‘제공’의 근거이므로, 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문의 명확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.

수정주요내용

안 제78조의2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, “제78조,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·보유·관리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”을 “제78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·보유·관리하거나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”으로 수정함(안 제78조의3제1항).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8조의2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안 제78조의3제1항 중 “78조,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·보유·관리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”을 “제78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·보유·관리하거나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”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6. (생략) <신설>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 1. ~ 16. (현행과 같음) <u>17. “외국인 기본인적정보”란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.</u> <u>가. 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국적, 사진 및 여권</u>	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

	<u>의 번호</u> <u>나. 외국인의 선</u> <u>원 신분증명서</u> <u>에 기재된 해</u> <u>당 외국인의</u> <u>성명, 성별, 생</u> <u>년월일, 국적,</u> <u>사진 및 선원</u> <u>신분증명서의</u> <u>번호</u> <u>다. 제31조제5항</u> <u>에 따른 외국</u> <u>인등록번호</u> <u>라. 「재외동포의</u> <u>출입국과 법적</u> <u>지위에 관한</u> <u>법률」 제7조</u> <u>제1항에 따른</u> <u>국내거소신고</u> <u>번호</u> <u>제78조의2(외국인 기</u> <u>본인적정보의 제공)</u> <u>① 법무부장관은</u> <u>「전자정부법」 제2</u> <u>조제2호에 따른 행</u> <u>정기관 및 같은 조</u>	<u>제78조의2(외국인 기</u> <u>본인적정보의 제공)</u> <u>① ~ ③ (개정안과</u> <u>같음)</u>
--	---	--

<신 설>

제3호에 따른 공공
기관(이하 이 조에
서 “행정기관등”이
라 한다)의 장이 외
국인에 대한 수사,
공소의 제기·유지
및 과세 등 관계 법
령에 따른 업무에
사용할 외국인 기본
인적정보의 제공을
요청하는 경우 이를
제공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등의 장
은 제1항에 따라 제
공받은 외국인 기본
인적정보를 「개인
정보 보호법」에 따
라 처리하여야 한
다.

③ 제1항에 따른 외
국인 기본인적정보
의 제공 방법 및 절
차 등에 관하여 필
요한 사항은 법무부
령으로 정한다.

④ 법무부장관은 외

④ -----

	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	을 -----. ② (개정안과 같음)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“외국인 기본인적정보”란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.

가. 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국적, 사진 및 여권의 번호

나. 외국인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국적, 사진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번호

다.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

라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

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8조의2(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) ① 법무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행정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, 공소의 제기·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사용

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수사, 공소의 제기·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에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78조의3(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법무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·보유·관리하거나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6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“ <u>외국인 기본인적정보</u> ”란 <u>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.</u> <u>가. 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국적, 사진 및 여권의 번호</u> <u>나. 외국인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국적, 사진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번호</u> <u>다.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</u> <u>라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</u>

<신 설>

소신고번호

제78조의2(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) ① 법무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행정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, 공소의 제기·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수사, 공소의 제기·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에

<신 설>

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78조의3(정보시스템의 구축·

운영) ① 법무부장관은 제78조

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

수집·보유·관리하거나 제78

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

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

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

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

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

법무부령으로 정한다.